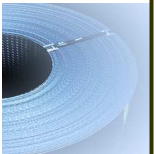


2005-3호 (2005. 7.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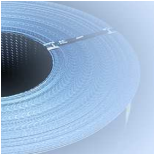
POSRI CEO REPORT

중국 철강산업 발전정책 의미 및 영향



중국연구센터
김동하

EXECUTIVE SUMMARY



〈중국 철강산업 발전정책 의미 및 영향〉

I. 정책 제정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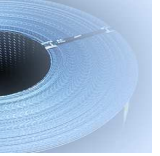
- ❖ 중국 철강산업의 양적 성장을 억제하고,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철강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강화 및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II. 정책 내용 및 의미

- ❖ 철강 생산능력 확장 억제 및 10대 철강사의 생산비중 70%로 제고
 - 연해지역에 위치한 대형기업 육성 반면, 내륙지역의 생산능력 증대 억제
 - 2개의 3천만 톤급 철강사 및 다수의 1천만 톤급 철강사 육성
- ❖ 일관제철소, 단독 제선·제강·압연 공장 등의 신설은 불허하고 기존 기업의 이전 혹은 구조조정과 연계될 경우에 한해 신설 프로젝트 허가
- ❖ 생산규모 1천 만톤 이상의 외국기업만 중국 내 투자가 가능하되, 단독 투자는 불허 및 지배주주 지위 불허
- ❖ 철광석 등 자원제한을 감안하여 저급 철강재의 수출 지양

III. 중국 철강산업 발전정책에 대한 평가 및 영향

- ❖ 연해·대형기업 중심의 철강산업 발전 모델 제시
 - 정부의 지원 하에 중국의 대형 철강사 급속 성장 전망
- ❖ 총량의 확대 없는 철강산업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공급과잉 가능성은 감소했으나, 중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한국에 대한 위협 증대
- ❖ 동북지역과 내륙지역의 노후 설비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향후 M&A 기회를 활용한 외국 대형 철강사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



목 차

I. 정책 제정의 배경	1
II. 정책 내용 및 의미	3
III. 중국 철강산업 발전정책에 대한 평가 및 영향	9
IV. 시사점	13
<참고> 철강산업 발전정책에 대한 중국 내 평가	14

I. 정책 제정의 배경

□ 중국 철강산업은 1999년 중국강철공업협회(CISA) 설립, 2000년 야금공업국 폐지와 WTO 가입 등을 계기로 국유기업이 독점하던 산업에서 민간의 진입이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됨

○ 현재 중국 내 민간 자본이 철강기업 설립 시, 자체 자금인 경우 일반 기업설립 절차와 동일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인 경우만 중앙부처인 發改委 인허가가 필요함

<표 1> 중국 철강산업의 인허가 및 관리·통제권 변화

구분	WTO가입 이전(~'00)		WTO가입 이후('01~)	
	주체	비고	주체	비고
중장기 계획 신설 투자	*국가계획위원회	9.5계획中 철강업 등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전계획/산업정책司	철강산업 정 책제정 대형 투자권
기존 증설	*국가경제무역위원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은행국 야금처	주요 프로젝 트 승인
시장진입	*야금공업국(중앙) *야금공업청(지방)	철강사 증시 상장	上同 (중앙) 지역별發改委(지방)	세부기업활 동은 무관
권익보호	중국강철공업협회	-	중국강철공업협회	제품표준 제 정 등 일부 위탁 관리
FDI社 투자	*대외경제무역부	外商투자	상무부	外商투자

주: 1. 상기 부처중 * 표시 부처는 현재는 통폐합 되어, 우측란 부처로 바뀌었음.

2. 經貿委 산하 야금공업국의 前身은 '98년에 폐지된 야금공업부임.

□ 철강산업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력 약화 이후,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구조적 문제점이 보다 심화되었음

○ 2000년 이후 철강경기가 급상승하면서 민간과 지방 정부 주도의 무분별한 투자로 10.5 계획 상의 철강산업 발전목표가 달성되지 못함

- 철강산업의 성장과 함께 자금도 및 에너지와 수자원 활용 목표 등은 달성되었으나, 소형 업체 수가 급증하여 노동생산성, 10대 철강사의 생산집중도 등은 목표에 미달함

- * 중국의 철강업체 수는 '00년 2,997개사에서 '03년 4,119개사로 기간 중 37.4%가 증가한 반면, 중국 전체 조강 생산량 중 상위 10대 철강사의 점유비는 '00년 50%에서 '04년 32.7%로 17.3%p가 축소됨

<표 2> 10.5계획 내 철강산업발전 주요 목표와 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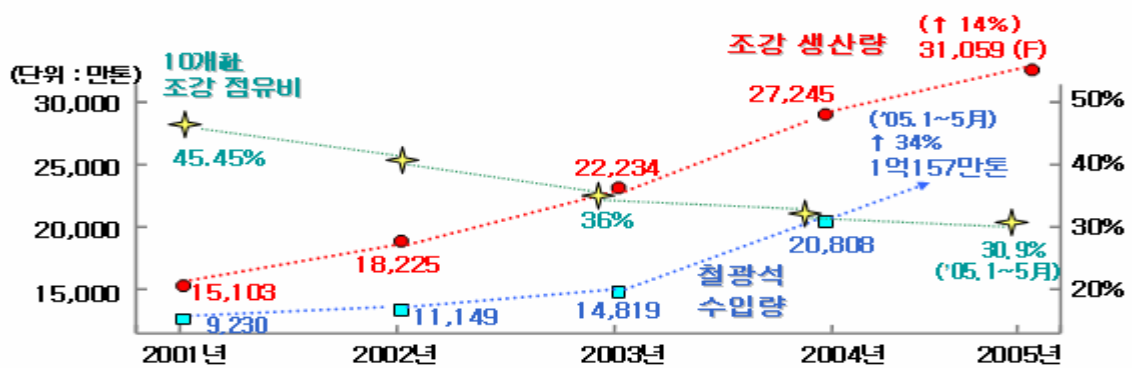
구분	2000년 현황	2005년 목표	2005년 결과	달성여부
자급도	90%	95%	98.9%	달성
에너지소비 (조강1톤당 석탄소비)	0.92톤	0.8톤	*0.75톤	달성
수자원 절약 (조강1톤당 新용수량)	30m ³	16m ³	*15.05m ³	달성
노동생산성(조강)	100톤/1인	250톤/1인	*160톤/1인	미달성
10대社 조강생산비	50%	80% 이상	30.9%	미달성

주 : 2005년 결과는 1~5월 누계 기준, * 표시는 2004년 중점 철강사 실적.

자료: 국가경제무역위원회(2001.6), CISA 및 기타 관련자료 종합 (2005.6).

- 또한 조강생산 급증에 따라 철광석 수입 급증, 인프라 병목 현상 등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함

<그림 1> 최근 중국 철강 생산 및 집중도, 철광석 수입 현황



자료: 중국철강통계(각호), Mysteel.com (2005.7), CISA(200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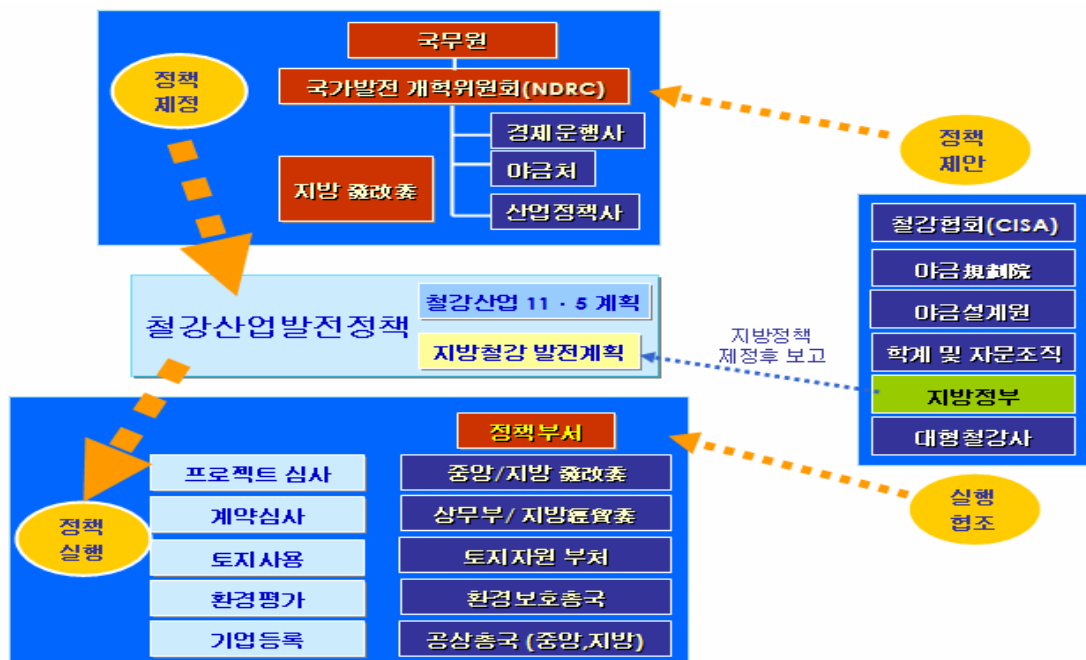
- 이에 중앙 정부는 철강산업의 양적 성장을 억제하고,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동 정책을 제정하게 됨

II. 정책 내용 및 의미

□ 철강산업 발전정책은 상위법 개념으로, 향후 중앙 및 지방의 정책부처에서 관련 인허가 및 평가시 기준 지침이 됨

- 同정책은 국내외 기업의 시장진입 및 증설의 자격 요건, 기술 및 환경지표, 기업의 자기자본금 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음. 同정책에 기초하여, 각 省, 市 자치구 등은 자체의 ‘철강산업 발전계획’을 제정하거나, 이미 제정된 관련 법규를 수정하게 됨
- 이외에도 철강 프로젝트의 인허가에 관련된 각 정부부서는 同정책에 기초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됨
- 또한 同정책이 제시한 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수량 목표, 지역, 해당 기업 등을 담은 철강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이 제정될 예정임

<그림 2> 철강산업 발전정책의 역할 및 제정, 실행 Flow



□ 同정책의 핵심은 철강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의 강화 및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철강산업의 재편임. 그러나 여러 이해 당사자의 이견으로 수차례 수정을 거쳐 2003년 1월 제정에 착수한 뒤 2년 6개월 여 만에 공포된 것임

○ 2003년 하반기에 작성이 완료된 ‘토론용’ 철강산업 발전정책은 공개 토론 과정(2003.12월 廣州)을 거쳐 정책 초안에 참여하지 않은 협회, 연구기관, 철강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대부분은 시장 진입 장벽이 높다는 의견이었음

- 중앙 정부는 투자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同정책의 제정전 임시 조치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산업의 맹목적 투자 억제를 위한 통지’를 국무원 명의로 공포(’03.12.23)하여 투자억제 조건을 정함

○ 2005년 4월 20일, 국무원은 철강산업 발전정책을 ‘원칙적’으로 통과 시켰으며, 이때 發改委는 국무원 상무회의에 ‘심의용’ 정책초안을 보고함. 이후 여러 이견이 제시되어 다시 3개월 간의 재심의 과정을 거친 후, 7월 20일 최종본이 공포됨

- 초안 심의 시 제시된 문제점으로는 ① 연해지역의 철강사 발전에 치중할 경우, 지역간 불평등이 고착화 될 것이라는 점, ② 국외기업의 철강 투자에 제한을 둘 경우, 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③ 4대 철강사(보강, 안강, 무한, 수도) 발전위주 정책에 대한 지방 정부의 반감 등이 있었음

□ ‘철강산업 발전정책’은 정책 목표와 산업 발전계획, 산업 분포, 기술정책, 원재료 등을 포함한 총 9장 40조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은 1) 철강생산 능력 제한, 2) 산업집중도 제고, 3) 철강산업의 재배치, 4) 환경보호 및 자원 효율 제고 등의 정책 목표가 제시됨

- ‘철강생산 능력의 제한’은 원래 거론되었던 3억 톤이라는 명시적인 총량목표는 삽입되지 않았으며, ‘합리적인 규모를 유지’한다는 큰 원칙만 제시함
- ‘산업집중도’ 부분은 제강업체 수를 대폭 감소시켜 10大 철강사의 조강 생산 비중을 2010년까지 50% 이상, 2020년까지 70% 이상으로 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철강산업의 재배치’는 자원, 인프라, 시장 환경 등을 감안하여 현재의 철강산업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임
- 특히 환경과 관련하여 에너지 소비, 수자원 절약 기준은 10.5계획에서의 목표보다 5~33% 높게 제시하였음 (표.3 참조. '05년 기준)

□ 제3장 ‘산업분포의 조정’은 철강사 신설 및 생산능력 증대와 관련된 원칙과 철강사의 지역별 분포와 관련 원칙을 제시함. ① 신설 일관제철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② 지역별로 철광석 수급, 시장상황, 인프라 등을 고려한 철강산업 발전방향을 명시하여 철강산업의 재배치를 유도함

- 제10조에서 독자적인 일관제철소의 신설, 독립적인 제선, 제강, 압연 공장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기존 기업의 M&A 혹은 이전과 결부된 기업개조와 확장의 형태로만 신설투자가 가능하게 함
 - 생산능력의 확대를 기존 노후 능력의 도태와 연계시켜 진행함으로써 생산규모 총량의 증가를 억제하려는 것임
- 제11조는 대형 철강기업은 연해지역에 위치하여야 하며, 내륙지역 철강기업의 철강생산은 철광석 자원 상황을 감안하여, 생산능력 확

대를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연해 중심의 철강산업 발전 방침을 밝히고 있음

- 지역별로는

- 1) 동북: 안산-본계를 기존 기업의 합병과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기지를 건설을 통해 대형철강사로 육성
- 2) 화북: 철강기업의 신설과 생산능력 증가를 엄격히 제한,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그 일환으로 수도강철 이전
- 3) 화동: 기존의 대형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및 제품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집중도 제고
- 4) 동남연해: 기존 기업의 구조조정과 제철소 이전(移轉)을 결합시켜 대형제철소 건설
- 5) 서남: 생산능력의 양적 성장을 추구하지 말고, 기존 중점기업 중심으로 설비 및 기술을 개선하여 제품을 고부가가치화, 철광석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생산량 결정
- 6) 서북: 생산능력을 확장하지 않고, 현지 수요 위주의 생산을 도모하며, 주변 국가의 철광석 자원을 활용

* 상기 6대 지역에 대한 중국 내 31개 省, 市の 구분은 同정책에서 규정되지 않았음. 단 중국 통념상 동남연해지역은 광서자치구, 광둥성, 복건성 3지역이 해당됨

□ 제4장 ‘산업기술정책’에서는 신설 설비에 대해 장비수준과 기술경제 지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10.5 계획보다 상향되었음. 동시에 기존 기업들도 기술개조를 통해 同지표를 달성할 것을 요구함

- 同정책은 10.5계획 대비 높은 기술수준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12조에서는 일관제철소에 대해 별도의 기술경제지표 기준을 제시하였음
- 또한 17조에서는 300m³ 이하 고로, 20톤 이하 전로 및 전기로 등 노후 설비의 도태를 규정함

- 18조는 국산설비의 사용을 장려와 해외설비의 수입을 제한 그리고 국내외의 노후 중고 철강설비의 채용을 금지함

<표 3> 철강산업발전정책의 기술경제지표 기준

	맹목투자 금지 통지 (’03.12)	최종본 (’05.7.20)
고로	1000m ³ 이상	3000m ³ , 800만 톤 이상
소결기	180m ² 이상	左同
코크스로	탄화실 높이 4.3m 이상	6m 이상
전로	100t 이상	200t 이상
전기로	60t 이상	70t 이상
일관 제철소 (고로)	a. 0.7톤 이하 b. 6톤 이하	左同

주 : a 조강톤당 종합에너지 소비량, b 조강톤당 新水 사용량,
자료: 發改委(2005.7), CISA 및 기타 관련자료 종합 (2005.7).

□ 제5장 ‘기업 조직 구조 조정’에서는 전략적 구조조정을 통해 2010년까지 3천만 톤급 철강사 2개와 수개의 1천만 톤급 철강사 육성할 것을 명시함

- 대형기업의 상호연합, M&A, 상호지분 공유 등을 통해 철강기업 수를 감소시키고, 조건을 구비한 대형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특대형 기업집단을 형성할 방침을 밝힘
- 대형 철강산업의 상장을 추진하고, 민영자본과 사회자본의 철강업에 대한 지분 참여 및 M&A 장려하고 있음
- 상호연합을 통해 설립된 대형일관제철소에 대해서는 생산능력 확대를 통한 집중도 제고를 지지하며, 비철강업의 구조조정, 인원재배치, 사회보장 등에 대해 정책 지원 제공할 예정임

□ 제6장 ‘투자관리 정책’에서는 신설 프로젝트에 대한 진입조건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외국기업이 중국 철강업 투자시 대주주가 되는 것(控股)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 모든 철강 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비준을 거치도록 하였음
- 23조는 중국 및 해외 철강사의 투자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존 철강사의 이전과 결부하여 일관제철소에 투자(10조에서 제정된 일관제철소 건설 조건)하고자 하는 국내 철강사의 경우 전년도 생산량이 500만 톤(특수강 50만 톤)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함
- 외국 기업이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① 반드시 자체 지적재산권을 소유하여야 하며, 전년도 생산량이 천만 톤(특수강 100만 톤)이어야 하며 ② 반드시 중국기업의 개조나 이전과 결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새로운 지역에 투자는 허용하지 않으며 ③ 지배주주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
- ※ 자동차 산업 정책의 경우, 구체적으로 외국기업의 지분의 합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同정책은 이보다 느슨하게 외국기업의 지배주주 불허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음

□ 제7장(28조~30조) 원재료 정책에서는 대형 철강기업을 중심으로 철광석 자원 탐사개발 및 철광석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를 장려하며, 자원소모가 큰 저급강재의 수출을 제한함

- 연해지역에 입지한 철강사들은 수입 원재료를 활용할 것을 장려하며, 원료수입에 있어 국내기업 간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함
- 한편 자원 절약을 위하여 자원소모가 많은 코크스 및 저부가가치 철강제품의 수출을 제한함

Ⅲ. 중국 철강산업 발전정책에 대한 평가 및 영향

□ ‘철강산업발전 정책’은 향후 중국 철강산업의 질서있는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새로운 중국 철강산업 발전모델을 제시하였음

- 이번 철강산업 정책이 제시한 철강산업 발전 모델은 연안 중심의 철강산업 발전, 대형산업 육성 통한 산업집중도 및 기술수준 제고, 환경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등임

<표 4> 중국 철강업 진입 조건

투자 주체	기존사 M&A	자기자본 금 비율	일관밀 투자
기존철강사 (中)	장려, 정책지원 부여	40% 이상	타지역 투자 자격은 自社 조강규모 5 백만 톤 이상
非철강기업 (中)	M&A, 이전(移 轉)과 결합		- 신설 불가 - 자금력, 공신도, 회계업적 필요
해외 철강사	가능, 단 절대 지분 불가		- 신설불가, 기존사 개조 및 이전과 결합 - 1천만 톤 이상 자격 제한
해외 非철강기업	가능, 단 절대 지분 불가		- 신설불가, 기존사 개조 및 이전과 결합 - 자금력, 공신도, 은행자산평가서, 실적 증명 필요

□ 同정책을 통해 중국 철강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강화 되었음

- 중국 내 소형 철강사 및 내륙 철강사와 외국 철강사에 대한 진입 장벽을 강화하여 대형기업 위주로 발전 시키겠다는 정책 의지를 나타냄
- 외국 철강사에 대한 진입장벽 설치에 대해서는 ‘경쟁 도입’과 ‘국내 산업보호’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음. 외국기업의 지배주주 불허용은 결국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두려워하는 중국 철강업계의 입장을 중국 정부가 지지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중국 철강산업은 향후 대형 철강사 중심으로 발전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보산강철과 안산강철은 중국을 대표하는 Big 2로서 중국 정부의 중점적인 지원을 받을 것임
 - 상해보강의 광동성 담강 프로젝트와 안산강철의 영구지역 신설 일관 밀 프로젝트의 승인 가능성은 타사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안산강철의 3천만 톤급 규모 달성을 위해 안산-본계의 합병의 관건인 稅收와 잉여인원 처리문제가 중앙 정부의 의지 하에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될 것으로 보임
- 1천만 톤급 규모로 확장하기 위한 중형 철강사들의 신설 프로젝트 추진과 중소 철강사들의 구조조정 및 합종연횡을 위한 M&A도 대대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 신증설 계획을 가진 동남 연해지역의 철강사들은 1천만 톤급 생산기지 건설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기존 중소 철강사간의 연합을 통한 대형화 움직임도 활발해 질 전망이다
 - 同정책은 특히 하북성의 철강업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어, 하북성의 한단강철과 당산강철이 주변 중형철강사를 흡수합병하여 1천만 톤급의 대형사로 성장할 전망이다
 - 또한 화동지역은 철강기업 밀집지역으로 규정되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여, 철강사가 밀집한 강소성, 절강성 등에서의 M&A도 활발해 질 전망이다
 - 자체 광산이 없는 내륙지역의 철강사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할 것이며, 내륙지역 철강사 간의 합병 및 제품 구조조정도 진전될 전망이다
- 또한 환경보호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도심지역에 위치한 기존 철강사들의 이전(移轉) 압력이 높아질 것임

- 현재 중점 철강사 74개 중 18개는 省의 수도에 위치하고 있고, 34개사는 인구 1백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인접하고 있음
- 현재 이전을 계획 중이거나 확정된 철강사는 수도강철 외에도 광주강철(광둥성, 조강 303만 톤), 중경강철(중경시, 264만 톤), 보강그룹상해2강(상해시, 선재 54만 톤)·포동강철(상해시, 174만 톤), 반지화그룹 성도강관(사천성, 165만 톤), 항주강철(절강성, 277만 톤) 등이 있음

□ 同정책은 철강생산능력을 ‘합리적인 규모로 유지’ 할 것을 명확히 함. 이에 따라 총량 증대 없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추진될 것임. 이에 따라 중국의 급속한 설비증설에 따른 세계철강산업의 공급과잉 우려는 감소할 전망이다

- 원래 거론되었던 ‘총량 3억 톤 제한’ 구절은 삽입되지 않았으나, 중국 정부는 향후 철강투자에 대해 ‘신증설=감산’의 等量 공식을 통해 철강생산능력 증대를 억제하고자 할 것임
- 중국 철강산업은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 폐쇄 대상인 8천만 톤의 설비를 경쟁력 있는 설비로 대체해 나갈 것임
 - 가령, 하북성 조비전(曹妃甸)에 진행중인 수도강철 1천만 톤 프로젝트의 승인 조건은 하북성 당산시의 저급 철강능력 700만 톤을 도태 시키는 것임. 향후 많은 신증설 프로젝트는 이러한 조건 하에 진행될 것임
- 따라서 중국의 공급능력 증가 속도는 현저히 완만해질 전망이다, 설비개조 및 제품 구조조정을 통한 철강산업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또한 철강산업 발전정책은 자원문제를 중시하여, 철강생산과 철광석 확보를 연계시키고(以鑛定產), 제한된 자원에 비추어, 철강수출의 확대를 도모하지 않기로 함

- 同정책 초안에 한 때 철강수출 확대를 추진한다는 구절이 있었으나 삭제되었으며, 자원 제약을 감안하여 내수 충족을 위한 철강생산에 보다 중점을 둠
 - 이에 따라 중국의 수출증대 위협은 일시적으로 약화되었음. 그러나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시장이 공급과잉으로 전환되면 수출 확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음
- 以鑛定產(철광석 자원에 따라 생산을 허용) 원칙에 따라 향후 철광석이 확보되지 않은 내륙 철강사들의 발전은 크게 제한 받을 전망이다
- 同정책은 외국기업의 진입조건을 명확히 함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대형 외국 철강사들의 중국 내 M&A Rush가 예상됨
 - 同정책의 발표로 외자기업의 중국 진출 시 M&A가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였음. 따라서 시장진입을 도모하는 Arcelor 등 해외 철강사의 중국 내 M&A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외국기업들의 주요 M&A 타깃은 200~500만 톤급 철강사들이 될 것이며, 2대 주주로 지분 투자에 참여한 이후, 신증설 등을 통해 1천만 톤급으로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보임
- 同정책은 국산 설비 사용을 장려하며, 중고 설비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해외 철강사들의 FDI 시 설비 도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특히 同정책 16조는 국산 신개발 설비를 사용할 경우, 稅收, 대출이자 보조, 과학연구비용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하며, 수입설비 사용 조건을 엄격히 함

IV. 시사점

- 同정책으로 중국 철강산업의 공급과잉 가능성은 다소 감소하였음. 그러나 중국 대형 철강사의 경쟁력 강화와 고급재 생산능력 제고에 따라 수입 제품과의 경쟁은 심화되고, 對중 수출 기회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 보산강철과 안산강철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급성장함에 따라 이들의 경쟁력은 급속히 향상될 것임

- 중국 투자에 있어 지배주주의 지위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강화되었으나, 반면 M&A를 통한 사업기회가 증대된 것도 사실임

- M&A 기회는 확장/이전 계획이 있는 중형 철강사, 정책적 장려지역인 동북 3성 지역, 내륙지역의 구조조정 대상 철강사 등 다양하게 존재함. 또한 정책적 선호 지역에 투자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중국기업과의 해외 자원 확보 경쟁이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기업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 철강산업 발전정책에 대한 중국 내 평가

- 일부 지방은 연해 지역에 대형 철강사를 건설하려함. 이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된 것만 광둥 담강, 광서 방성항, 복건 영덕, 요녕 영구 등이며, 이들 모두는 1천만 톤 이상급임. 同정책의 원칙에 입각해 장기적으로 보면, 연해지역 대형 제철소는 반드시 중앙정부의 11.5 발전 계획 및 同정책 요구와, 기존 철강사의 도태와 이전(移轉)과 결합하여, 총량이 통제되는 상황 하에서 각종 건설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면적이고 포괄적이며 통일적인 검토후에 확정될 것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司 사장 劉鐵南, 發改委 News Site '05.7.20)
-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철강업에 대해 전문적으로 산업정책을 제정한 경우가 없었음. 또한 과거 중국에서 철강업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책은 중앙부처였던 야금부에서 공포되었음. 이번 정책은 유일하게 국가발전개혁위원회(部급)에서 초안을 작성 하였으며, (상위부처인)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과한 것임. (중국야금규획연구원 부원장 李新創, 중화상무망 '05.7.20)
- 同정책 실시 후 중소 철강사들은 M&A 되거나 도태될 것임.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는 해당 기업은 경쟁력을 보유해야 함. 同정책내 연해지역 발전 조항은 여전히 방향 제시에 불과하며, 여전히 구체적인 요구조항이 없음. 이는 모든 연해지역이 연원료, 시장, 수자원, 환경보호 등 철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同정책은 거시정책으로써 철강산업 전체에 대해 일정한 방향을 요구한 것임. 또한 아직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일종의 '소프트 구속력(軟約束力)' 으로 볼 수 있음. (중국야금규획연구원 부원장 李新創, 남방일보 '05.7.19)
- 同정책은 크고 적게 30여 차례의 수정 작업을 거침. 본인 손에 도착한 판본(板本)만 4종류임. 초창기 토론용 원고와 비교하여, 산업분포, 장기계획 등은 최종 판본에서도 별 큰 변화가 없었음. 단 여러 가지 수치와 요구조항들이 구체화 된 것임. 전체적으로 同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분화, 현저화(필요한 부분을 강조) 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초기 신설 철강기업의 자기자본금 비율은 50%였으나, 최종본에서는 40%로 조정됨. 이는 중국 철강사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대다수 기업은

과거 사업실행시 자기자본금 비율이 20~30% 수준이었음. (Mysteel.com
부총경리 賈良群, 중화상무망 '05.7.20)

- 同정책 초기 판본의 관련 수치는 비교적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최종 판본에서의 수치는 필요한 수정을 거쳤음. 그 이유는 현재 대다수 기업의 설비 수준을 고려한 것임. 예로 철강업 표준 고로 내용적 기준을 최초 기준인 2500m³으로 했을 경우, 중국 내 거의 모든 철강기업은 살아남지 못하며, 최종본 기준인 1000m³ 역시, 절반 이상은 기준 미달이 됨. 하북성의 경우도 현재의 기준에 따르면 조강능력의 절반을 감축해야 함. (하북성 야금협회 책임자, 중화상무망 '05.7.20)
- 同정책의 일부 조항은 실제 실행하기가 힘들 것임. 外商의 절대지분 불허 조항의 경우, 중국에 투자하려는 많은 외국 철강사들은 규모 제약 조건(일반강 규모 1천만톤 이상 등)은 이미 충족하고 있음. 단 이러한 절대지분 불허 조항은 중국기업의 다원화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임. 또한 同정책에서 규정한 여러 시장 진입조건은 민영기업에게는 여전히 넘기 어려운 장벽임. (중국광산업협회 책임자, 중화상무망 '05.7.20)

김동하 (dhkim@posri.re.kr)